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구제자금의 재원 중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분담금 산정시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2017년 2월 8일까지의”를 “분담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로, “제13조의2제2항”을 “제13조의4제2항”으로,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을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통보 받은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34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u>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u>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u>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긴급대응반	
연 락 처	(044) 201 - 7514